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88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이정문・기동민・김철민

김홍걸 · 문진석 · 민형배

박상혁 · 신동근 · 안민석

이동주 · 이용빈 · 이학영

조승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은 105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조직의 총 인력은 3.086명이며 총 예산은 6.913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운영 재원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지역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인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

우 미리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 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 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 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제12조의3, 제21조제3호의2 및 제2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조직"을 "지역조직(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해당 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회는 해당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3.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에 관한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 4. 그 밖에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에 관하여 연구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4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재원) ①・② (생	제5조(운영 재원)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	③
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u>지역조직</u> 을 설	<u>지역조직(제24</u>
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거
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	쳐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해당 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지급할 수 있다.	<u>같다)</u>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	제9조(정관) ①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지역조직의 설립·운영에 관
	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2조의3(지역조직 설립·운영계
	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

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회는 해당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타 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3.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에 관한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 4. 그 밖에 연구기관의 지역조 <u>직 설립·운영에 관하여 연구</u> <u>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u> <u>항</u>
-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타 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8. (생 략)

제24조(이사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 8. (생 략) <신 설>
- 9. (생략)
- ③ ~ ⑥ (생 략)

<u>실시할 수 있다.</u>
④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
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운
영에 대한 평가
4. ~ 8. (현행과 같음)
제2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
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